

대법원 2005. 8. 19 선고 2004다8197 판결 [건물명도등] [공2005.9.15.[234],1495]

판시사항

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
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(적극)

판결요지

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,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,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고, 한편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원 · 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,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.

참 조 조 문

민사소송법 제216조, 제415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6. 9. 22 선고 2006다29990, 2006다30006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6. 4. 7 선고 2005나75981, 2005나75998 판결

대법원 2005. 8. 19 선고 2004다8197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03. 12. 24 선고 2003나11105, 11112 판결

참 조 판 례

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다카829 판결(1984,520)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카1503
판결(1988,189)

따 릇 판 례

대법원 2022. 8.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, 대법원 2011. 10.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,
대법원 2010. 12.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, 창원지방법원 2006. 2. 17 선고 2005고합272,
275, 2006고합1(병합) 판결

전 문

【원고, 상고인】 구○서

(소송대리인 변호사 구○일)

【피고, 피상고인】 김×채 외 3인

(소송대리인 변호사 왕♡양)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2003. 12. 24. 선고 2003나11105, 11112 판결

주 문

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김×채에 대하여는 29,430,000원, 피고 하◇수에 대하여는 30,316,000원을 각 초과한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원고의 피고 이◇구, 피고 유△자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×채, 피고 하◇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.

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◇구, 피고 유△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1.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제1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

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, 이는 원고가 김□회와 제1심 공동피고 배×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채권의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것이어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.

2.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

가. 피고 이◇구, 김×채, 하◇수의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주장 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, 피고 이◇구가 배×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이△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배×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배×오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고 이◇구는 배×오에 대하여 여전히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, 피고 김×채, 피고 하◇수는 피고 이◇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, 난방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각 해당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여 피고 이◇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 이◇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, 피고 김×채, 피고 하◇수는 피고 이◇구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, 유치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또한, 원고와 피고 이◇구 사이의 분쟁의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, 피고 이◇구가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다시 양수받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

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, 설사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(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카1503 판결),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.

또한,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원 · 피고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,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없어 비록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.

그런데 피고 김×채, 피고 하◇수에 대한 명도 부분에 관하여 보면, 제1심판결에 의할 때 원고는 피고 이◇구를 대위하여 29,430,000원을 변제하면 피고 김×채가 점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1호를 명도받을 수 있고, 피고 이◇구를 대위하여 30,316,000원을 변제하면 피고 하◇수가 점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2호를 명도받을 수 있었는데, 원심판결에 의하면 배×오를 대위하여 377,000,000원을 변제해야 위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명도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,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

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다.

피고 유△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제1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, 피고 유△자가 배×오를 대리한 소외 김♂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호를 임차하고 그 보증금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합계 2,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, 피고 유△자가 위 201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1997. 2. 4.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된 후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, 피고 유△자의 배×오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배×오의 피고 유△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

원고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 유△자는 배×오로부터 임차보증금 2,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.

3.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김×채, 피고 하◇수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있어서 피고 김×채에 대하여는 29,430,000원, 피고 하◇수에 대하여는 30,316,000원을 각 초과한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명도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, 원고의 피고 이◇구, 피고 유△자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×채, 피고 하◇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,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◇구, 피고 유△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용담(재판장) 유지담 배기원(주심) 이강국